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1
----------	------

2022. 3. 16.(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영은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3월 16일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영은 의원)

가. 제안사유

-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재지킴이” 정의 (안 제2조)

-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

○ 도지사의 책무 및 추진계획, 협력체계 구축 (안 제3조~제5조)

○ 홍보 및 교육, 포상 (안 제7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민간차원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문화재 홍보·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음.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문화재지킴이의 활동 및 관련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문화재지킴이의 교육실시와 문화재 보호 활동 우수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조례안은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에 따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단체"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재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

○ 사 유

- 문화재지킴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의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자원봉사자로,
-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 및 관련 교육 이수 이후 위촉까지 모든 과정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음.
- 또한 위촉 이후 별도의 운영지침 없이 지킴이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없음.
-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문화재지킴이 지원(안 제6조)은 권고 형식의 조항이며 지원규모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